



: 2019-06-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35168 주식인도 및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정승식, 박은범, 이용준, 홍영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조범곤, 김동석
변 론 종 결 2018. 8. 24.
판 결 선 고 2018.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6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75,000주를 포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는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 벤처기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5. 3. 24. 입사하여 2016. 3. 23.부터 2017. 3. 2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경영관리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피고는 ① 2015. 3. 2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22. 원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2016. 3. 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40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29. 원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7. 3. 3.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회사 규율 및 질서문란,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 주주총회 결의

피고는 2017. 3. 24.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제6호 의안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8.자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75,000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18.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400,000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실제로 없음에도 강행된 것으로서 권한 범위를 일탈하고, 결의 내용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 475,000주에 대한 행사가액 2,06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2018. 3. 23.까지 임기가 남은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잔여임기 2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합계액 360,000,000원 및 임기만료시 미지급 퇴직금 6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원고의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도덕성 흠결,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취소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설령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8. 3. 23. 임기가 만료되므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2016. 3. 23.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의 재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역시 위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정당하게 해임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 해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규

상법 제385조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가 사용한 법인카드(원고명의) 2016년도 사용액수의 합계액이 41,293,540원으로서 피고 대표이사 C의 같은 기간 접대비 합계액 32,589,200원을 상회하나(갑 제11호증의 2, 피고 제출



별지 3 참조), 원고가 경영기획팀, 자금팀, 회계팀을 모두 지휘하는 CFO로 활동한 점과 피고 회사의 규모, 원고가 활동하면서 투자유치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 자체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2016년도 법인카드 월 평균사용액은 3,441,128원으로, 소외 D 전무이사(월 평균 3,361,752원), 소외 E 이사(월 평균 3,198,167원)의 사용액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갑 제11호증의 2 참조), 원고가 부사장이라는 직급으로 외부 투자유치에 힘써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15. 9. 23. 법인카드 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접대비의 경우 총액 50만원 이하로 사용하되,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무담당임원에게 사전보고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도록 정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접대비 지급규정(2016. 6. 29. 제정하여 2016. 7. 1.부터 시행)에서는 사전보고 및 승인까지 받도록 하였음에도(을 제13호증 참조),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100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피고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접대비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당할 만한 상법상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접대비 지급규정에 따른 사전보고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이를 결제승인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회사 규율 및 질서문란, 도덕성 흠결은 다소 주관적·심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을 제 3 내지 9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2018. 3. 23. 임기가 만료되어



2016. 3. 23.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의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 해임은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퇴임이라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부적법하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475,000주에 대한 행사가액 2,062,500,000원(75,000주 × 3,500원 + 400,000주 × 4,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의 적법 여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



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참조).

나아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그런데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결론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지고 법원으로서도 증명되었다고 인정된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해임을 결의한 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도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위 나.항에서 살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임사유로 나열한 사유들은, 원고가 해임 당할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였던 원고가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이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 동안 또는 그 임기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남은 임기인 2017. 3. 24.부터 2019. 3. 23.까지의 연봉합계액은 360,000,000원(= 월 15,000,000원 × 12개월), 퇴직금 미지급액은 60,000,000원(= 해임당시 월 평균 임금 15,000,000원 × 기준지급율 근속 1년당 2개월 × 잔여임기 2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360,000,000원 +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연



.
.
: 2019-06-26

판사 박성용

판사 최유빈



: 2019-06-26

별지 1. 주식매수선택권의 표시

부여일	2015-03-25	2016-03-23
부여 주식수	75,000 주	400,000 주
행사가격(1 주당)	3,500 원	4,500 원
행사기간	2017. 3. 26. ~ 2024. 3. 25.	2018. 3. 24. ~ 2025. 3. 23.
유형	신주발행	신주발행



별지 2. 원고의 10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표시

날짜	업체명	금액	증거
2016. 1. 18.		1,000,000원	을18-1, 을 19-1
2016. 3. 4.		1,000,000원	을18-3, 을 19-3
2016. 4. 7.		1,100,000원	을18-4, 을 19-4
2016. 4. 15.		1,500,000원	을18-4, 을 19-4
2016. 5. 11.		2,380,000원	을18-5, 을 19-5
2016. 5. 13.		1,600,000원	을18-5, 을 19-5
2016. 6. 28.		1,400,000원 (바로 직후 추가로 35만원을 동일업체에서 지출)	을18-6, 을 19-6
2016. 7. 5.		2,000,000원	을18-7, 을 19-7
2016. 7. 22.		1,000,000원	을18-7, 을 19-7
2016. 8. 2.		1,500,000원	을18-8, 을 19-8
2016. 8. 19.		1,000,000원	을18-8, 을 19-8
2016. 10. 14.		1,000,000원	을18-10, 을 19-10
2016. 11. 7.		1,500,000원	을18-11, 을 19-11
2016. 12. 5.		1,000,000원	을18-12, 을 19-12
2016. 12. 15.		1,300,000원	을18-12, 을 19-12